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권 보장〉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56호)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063호)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0388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356호)	1
2.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063호)	2
3.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388호)	3
II. 주요 내용별 검토	4
1.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권 보장 ...	4
가. 개정안의 내용	4
나. 검토의견	25
다. 관계 기관 의견	32

I. 개요

1.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35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6. 19.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과 배우자의 경제적 생활 여건이나 직역연금 수급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에 따라 배우자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2.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06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7. 21.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이하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빈곤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삭제 등).

3. 백선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038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선회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6. 8. 3
- (3) 회 부 일 : 2026. 8.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직역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연금액이 적은 경우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어 노후 빈곤에 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또한,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의 기초연금 수급권 보장

가. 개정안의 내용

□ 각 개정안은 현행법 제3조제3항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이하 “직역연금”이라 한다)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등에 대하여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윤준병의원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와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그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²⁾에 따른 선정기준액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제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2)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문진석의원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이들에 대한 기초연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백선희의원안**은 직역연금 중 일시금이 아닌 연금의 수급권자로서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 대하여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직역연금 중 퇴직·퇴역·분할연금의 수급권자(이하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에 퇴직연금등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하 “퇴직연금등 급여액”이라 한다)에 3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하되,

퇴직연금등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하고, 퇴직연금등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장해연금, 비직	----- ----- ----- -----수급권자 또는-----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미수급자”라 한다)에게는-----. 1. ~ 4. (현행과 같음)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로서 그 연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무상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			유족연금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유족연금 또는 「군인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u>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 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u> 2. 「<u>군인연금법</u>」 제7조에 따른 <u>퇴역연금</u>, <u>퇴역연금일시금</u>, <u>퇴역연금공제일시금</u>, <u>퇴역유족연금</u>, <u>퇴역유족연금일시금</u> 또는 「<u>군인재해보상법</u>」 제7조에 따른 <u>상이연금</u>, <u>상이유족연금</u>, <u>순직유족연금</u>, <u>순직유족연금일시금</u>			<u>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u>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신설>	④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배우자는 제1항 및 제2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④ (생략)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 ④ (생략) ⑤ 국민연금 수	<u>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 ----- ----- ----- -----제2항----- ----- ----- -----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u>기준연금액</u>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3. (생략) ⑥ (생략) <u><신설></u>			----- ----- ----- ----- ----- ----- ----- ----- ----- -----. 1. <u>기준연금액</u> 2.·3.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u>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직역연금 수급권</u>
		⑦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u>	⑦ <u>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직역연금 수급권</u>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장해연금, 비직무상장해연금, 비직무상장해일시금, 비공무상장해일시금, 비직무상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	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8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수급권자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또는 제222조에 따른 퇴역연금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수급권자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의10에 따른 퇴직연금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수급권자

현	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퇴직 유족연금일시 금 또는 퇴직 유족일시금[퇴 직유족일시금 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제20 조제1항에 따 라 순직유족연 금의 수급권자 가 순직유족연 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 (「사립학교교 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 족연금의 수급 권자가 직무상 유족연금을 갈 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 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 항에 따라 위 험직무순직유 족연금의 수급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u>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같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u> 2. 「<u>군인연금법</u>」 제7조에 따른 <u>퇴역연금</u>, <u>퇴역연금일시금</u>, <u>퇴역연금공제일시금</u>, <u>퇴역유족연금</u>, <u>퇴역유족연금일시금</u> 또는 「<u>군인재해보상법</u>」 제7조에 따른 <u>상이연금</u>, <u>상이유족연금</u>, <u>순직유족연금</u>, <u>순직유족연금일시금</u> 3. 「<u>별정우체국법</u>」 제24조제2항에 따른 <u>퇴직연금</u>, <u>퇴직연금일시금</u>, <u>퇴직연금공제일시금</u>, <u>유족연금</u> 또는 <u>유족연금일시금</u>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신설>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 계에 관한 법 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 연금 또는 연 계퇴직유족연 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 호에 따른 직 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 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 연금	⑧ 직역연금 수 급권자에게 지급 하는 기초연금액 은 제1호의 금액 에서 제2호의 금 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에는 0으로 한 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 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⑦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1.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제4항 각 호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⑧ ----- ----- ----- ----- ----- ----- ----- -----. 1. 제4항 각 호, 제6항 또는 제7항----- ----- 2. (현행과 같음)	2.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에 3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⑨ ----- ----- ----- ----- ----- ----- -----. 1. 제4항 각 호, 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 ----- 2. 제4항 각 호, 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 ----- ----- ----- -----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가. ~ 라. (생략)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 권자에 대한 기 초연금액 산정 의 특례) ① 제5 조제2항 전단에 도 불구하고 65 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 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 게 적용하는 기 준연금액은 30 만원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 관은 제1항의 기 준연금액을 적용 받는 사람을 선 정하기 위한 소 득인정액(이하 “저소득자 선정 기준액”이라 한 다)을 정하여 고 시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자 선 정기준액의 기 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			가. ~ 라. (현 행과 같음) <삭 제>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 ----- 제5조제4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 ----- ----- ----- ----- ----- -----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u>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u>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5조제4항부터 <u>제6항</u>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 -----<u>제7항</u>-----	----- --. ② ----- -----<u>제5조제4항 각 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u>----- ----- ----- ----- ----- ----- ----- ----- ----- ----- ----- --.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 -----<u>제8항</u>-----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다. 제8조(기초연금액 의 감액) ① (생 략)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기초연 금액(제1항이 적 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 영된 금액을 말 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액 이상인 경우 에는 선정기준액 을 초과하는 금 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 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 초연금 수급권자 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 (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 ----- -----.	----- ----- -----. 제8조(기초연금액 의 감액) ① (현 행과 같음) ② ----- 제5조----- ----- ----- ----- ----- ----- ----- ----- ----- ----- ----- ----- ----- ----- ----- -----. <삭 제>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액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삭 제>	④ 제2항----- ----- ----- ----- -----.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 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 3조제3항에 해당 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사·시장·군수 ·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 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해 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에서 제외될 사 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충족하는 사 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기초 급여액의 100분 의 5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기초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 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일 것 2. 1996년 6월 3 0일 이전에 출 생한 사람일 것 3. 65세에 도달 할 당시 이 법 과 함께 공포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 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 부개정법률 제 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4.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기준액(제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현행	윤준병의원안	문진석의원안	백선희의원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①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②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3)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

- 참고로,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수급권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나,

2014년 5월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면서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된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및 ‘직역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는데,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는 종전의 법률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기준연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⁴⁾

해연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2. 「군인연금법」 제7조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3. 「별정우체국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직역제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4) 법률 제12617호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1949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하였을 것
2.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5세에 도달할 당시 제3조제3항에 해당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일 것
2.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일 것

□ 각 개정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가 기초연금 수급권 여부를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등이 자신의 실제 경제적 생활 여건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 2015년 6월 법률 제13387호로 공포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과 같은 해 12월 법률 제13561호로 공포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재직기간이 종전의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고, 공무원연금 기여율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부담률은 각각 인상된 반면,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퇴직연금액 비중은 인하되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변경되는 등 직역연금의 급여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추세이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역연금 수급권 유무만으로 현재의 실질적인 경제적 생활 여건을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등을 다른 사람과 차별할 합리적 이유는 크지 아니하다고 할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3. 65세에 도달할 당시 이 법과 함께 공포·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례를 인정받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것

4.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지급 개시 후에 선정기준액(제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하는 선정기준액을 말한다)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참고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 월 급여액이 25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약 44.7만명으로, 전체 수급자(약 59.4만명) 대비 약 75%에 이르는 하지만, 월 급여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2,020명)도 있는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동질의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 ('25. 12월 기준) >

(단위: 명, 원)

구분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수급자	131	1,889	20,116	61,557	63,664	447,002
평균 급여액	391,670	834,287	1,359,716	1,763,789	2,264,895	3,357,677

주: 분할연금·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및 비공상 장애연금 제외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다만, 각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등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할 대상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문진석의원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 본인과 그 배우자 모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이고, 윤준병의원안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를 그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이며, 백선희의원안은 직역연금 중 일시금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연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외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 한하여 그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각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초연금법」 제정 당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을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던 사유인 직역연금의 급여 수준, 국민적 정서, 국가의 재정부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등 중 어느 범위에까지 기초연금 수급권을 보장할 것인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이 경우 직역연금 급여액 수준 등 소득 요건을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각 개정안만으로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기 위한 ‘선정기준액’ 요건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윤준병의원안은 동 개정안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의 선정기준액이 그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하여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백선희의원안은 직역연금 중 일시금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연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계속 제외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각 개정안에서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에 적용되는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기준(윤준병의원안)이나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급여액(백선희의원안)에 관한 사항

일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고 있어 어떤 원칙에 따라 그 기준이나 급여액 등이 결정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강을 법률에서 우선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셋째, 국민연금 수급권자 등의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비추어 직역연금 수급권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구체화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진석의원안 제5조제7항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국민연금 연계금액’에 상응하는 산정 방식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⁵⁾ 그 일체를 포괄 위임하고 있어 직역연금 수급권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이 어떤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하여질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함.

5)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제61조, 제64조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6조·제9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⑤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연금액(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기준연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금액 중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매년 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이라 한다)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의 금액을 연기 또는 조기 지급하거나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연금의 금액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⑥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기준연금액

2.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

가. 소득재분배급여금액

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

3.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한다거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20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적용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⁶⁾ 직역연금 수급권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도 직역연금 급여액 수준에 따라 적정 수준의 기초연금액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산정 방식이 면밀히 설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참고로,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등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 등으로 김선민의원(의안번호 제4828호), 김동아의원(의안번호 제16484호) 및 박민규의원(의안번호 제20235호)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각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6) 「기초연금법」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급권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국민연금 급여액등”이라 한다)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4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초과 100분의 20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소득과 무관하게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권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 기초연금제도는 현재 상태의 노인 빈곤을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기획예산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필요성, 구체적 지원 대상 등에 대하여는 추후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인사혁신처)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기초연금 적용을 배제하면 하위 연금소득자의 노후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산정되는 기초연금액의 구조를 고려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산정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6

〈참고〉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구분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공무원연금	해당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장해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제외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해당	○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직무상 유족보상금, 재난부조금, 퇴직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유족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장해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제외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유족연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군인연금	해당	○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 삼아보상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퇴직일시금, 재해부조금 ○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제외	○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해당	○ 퇴직일시금, 퇴직수당,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시
	제외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주: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